To: 0517141284

협 조 문

고용노동부 위탁지정 교육기관

중소기업산업안전센터

담담:교육지원팀 김시옥 팀장 02-2089-8856

문서번호: 개정 25-017

시행일자: 2025년 3월 1일 - 2025년 3월 31일

수 신:대표님귀하

담 당: 사업장 교육 담당자

참 조 : 안전관리 담당자

<u>선</u>	7	지시	Ч
접 수	일자		
	시간		11
처리	부서	- 공 릴	<u>-</u>
담당	당 자	0 8	

상시 근로자 사업장 1/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교육 시행의 건

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사고를 기원합니다.

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주의 반기별 안전보건사항 이행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. (고용노동부 수시 점검예고) 이에 따라 상반기 내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※ 각 교육에 따른 근거법령(법제처)을 확인 및 고용노동부 위탁 지정 기관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→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_20250113 → 엑셀 다운로드 목록174번

교목명	관련법령	교목시간 및 미실시 과태료	동시 진행가능 (소요시간 60분)
산업안전보건교육	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(중대재해처벌법 시행)	매년 반기별 6 ~ 12시간 (미실시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)	
성희롱예방교육 (2인 이상 사업장)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	연 1회 1시간 이상 (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)	
장애인인식개선교목 (1인 이상 사업장)	남녀 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	연 1회 1시간 이상 (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)	
개인정보보호교육	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	연 1회 이상 (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)	
퇴직연금교육	근로자퇴직급여법 제32조	연 1회 이상 (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	

교육방법 안내

신청문의	02-2039-8356 김시옥 팀장		근로자 건강관리 켐페인 3만원 상당 고현정 유산균(컬처텔) 참석자 전원증정
교육 장소	강사 출강 (전국가능)	사은품	
교육 일시	사업장 일정 협의		
강의료	무상/유상(은라인) 교육 택일 가능		

중소기업산업안전센터